

1. 개정이유

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「검찰청법」 폐지와 「공소청법」 및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

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춰,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분류조사 방법 중 사실조회 대상 기관 중 “검찰청” 부분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수정(안 제70조)
- 나. 조직폭력수용자의 특이사항 통보 대상 기관 중 “검찰청” 부분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수정(안 제203조)
- 다.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임명 또는 위촉 대상 중 “검찰국장” 부분을 “형사사법국장”으로 수정(안 제239조)
- 라. 소장이 가석방취소자 등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어 구인을 의뢰할 경우, 의뢰 대상 기관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” 부분을 “지방공소청 검사”로 수정(안 제263조제3항)
- 마. 미결수용 중인 자의 가석방 취소 결정으로 남은 형기를 집행하게 된 경우, 집행지휘 기관을 “검찰청”에서 “공소청”으로 수정(안 제263조 제6항)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3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203조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239조제1호 중 “검찰국장”을 “형사사법국장”으로 한다.

제263조제3항 중 “지방검찰청”를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0조(분류조사 방법) 분류조사 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2. (생략) 3. <u>검찰청</u> , 경찰서,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4. ~ 5. (생략)	제70조(분류조사 방법) ----- -----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</u> , --- ----- 4. ~ 5. (현행과 같음)
제203조(특이사항의 통보)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의 편지 및 접견 의 내용 중 특이사항이 있는 경 우에는 <u>검찰청</u> ,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.	제203조(특이사항의 통보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</u> , -----.
제239조(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)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 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임 명하거나 위촉한다. 1. 법무부 <u>검찰국장</u> · 범죄예방 정책국장 및 교정본부장 2. (생략)	제239조(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) ----- ----- -----. 1. ---- <u>형사사법국장</u>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
제263조(남은 형기의 집행) ① ~ ② (생략) ③ 소장은 가석방이 취소된 사 람(이하 “가석방취소자”라 한 다) 또는 가석방이 실효된 사람 (이하 “가석방실효자”라 한다)	제263조(남은 형기의 집행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

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구인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.

④ ~ ⑤ (생략)

⑥ 가석방 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교정시설에 미결수용 중인 자의 가석방 취소 결정으로 남은 형기를 집행하게 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형의 집행을 지휘하였던 검찰청 검사에게 남은 형기 집행지휘를 받아 우선 집행해야 한다.

----- 지
방공소청 -----

-----.

④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 공소청 -----

-----.